연구노트 관리규정

□ 제정 : 2021. 9. 1.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,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 자 및 참여연구원(이하 "연구자라 한다)를 적용대상으로 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1. "연구노트"라 함은 기록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.

- 2. "서면연구노트"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.
- 3. "전자연구노트"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·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하다.
- 4. "전자문서'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부를 말하다.
- 5. "전자화대상문서"라 함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.
- 6. '기록자'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.
- 7. '점검자'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.

제 2 장 연구노트의 작성

제4조(연구자의 책무) 연구자는 이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

8-0-13 연구노트 관리규정

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연구노트의 요건) ①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- 1. 기관명, 일려번호,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
- 2. 기록자 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
- 3.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- ②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기록자의 서명 인증기능
- 2.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
- 3. 기록물의 위•변조 확인 기능

제6조(작성항목) ① 연구노트에는 실험방법 및 과정, 실패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실험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.

- ② 이외에 연구노트에는 연구수행내용에 따라 다음 항목을 필요에 따라 작성한다.
- 1. 여구목적
- 2. 특이한 사항이나 관찰내용
- 3. 실험을 중단한 경우의 사유
- 4. 발명의 착상 또는 착상을 실행하기 위한 연구계획
- 5. 논의 및 결론

제7조(작성방법)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·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 (AC): 하다.
- 2.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과제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 하여야 한다. 다만,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 3.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.
- 4. 작성내용을 수정·삭제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내용이 보이도록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사선을 그어 수정·삭제한 다음 수정·삭제한 사람이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한다.
- 5. 중요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수정사유를 명기한 후 점검자와 함께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.
- 6. 추가로 삽입한 부분은 삽입 표시와 함께 일자를 기재고 서명하여야 한다.
- 7. 연구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사항(사진, 실험장비의 출력물, 타연구실의 실험결과

- 등)은 일자 순으로 고정, 부착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하고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8. 한 페이지를 다 채우지 않은 상태로 기록이 끝난 경우, 작성 중 한 페이지를 건너뛰었을 경우 한 교육이 가장 이 기계를 건너뛰었을 경우 한 교육이 가장 하다.
- 9. 연구노트 기록자의 작업 내용이나 의견이 아닌 경우 혹은 인용한 내용은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.
- 10. 불리한 정보의 존재를 오해받지 않도록 한 페이지라도 찢어져서는 안 된다.
- 11.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8조(연구노트의 소유) 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연구노트는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는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학협력단의 소유(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)를 원칙으로 하다.
- ②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,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 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.
- **제9조(보관 및 관리)** ① 사용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, 외부로 반출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연구노트의 보존 및 관리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하며, 산학협력단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, 관리하여야 한다.
- 1.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작성일로부 터 30년으로 한다.
- 2. 연구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연구자는 퇴직,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산학협력단에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산학협력단은 보관된 연구노트의 열람과 관리대장을 구비하고, 사본의 회수와 폐기 등 연구노 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- ⑤연구기간이 종료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 및 유사연구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연구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의 승인 하에 일정기간 연구책임자가 보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배부 및 보관 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대외비로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8-0-13 연구노트 관리규정

제10조(공개) ① 보관된 연구노트는 본교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
제11조(폐기) ① 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